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69
----------	------

발의년월일: 2019. 8. .

발 의 자: 이민옥의원

찬 성 자: 황선화의원, 남연희의원
임종숙의원, 이성수의원
민운기의원 (총5명)

1. 제안이유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통하여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구청과 협의

다. 입법예고: 2019. 8. 12. ~ 8. 16.(5일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이하 “캠프”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8. 12. 이민옥 의원

나. 회부일자: 2019. 8. 19.

다. 상정일자: 2019. 8. 27.

(제24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이민옥 의원

나. 제안이유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구청과 협의

다. 입법예고: 2019. 8. 12. ~ 8. 16.(5일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현재 대부분의 동에서 성동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캠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캠프가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동별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겨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등의 원칙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원봉사캠프 설치시에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확산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캠프 활동비 및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